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발 의 자 : 김동식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윤기배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황순자 의원, 홍인표 의원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추가함(안 제1조)
- 시장의 책무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차별 및 편견 해소, 다양한 시책 발굴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정비하고 지원단의 구성, 기능, 운영, 단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자조단체 및 시설, 가족단체 등의 지원과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안 제19조)

3. 검토의견

□ 개정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울증, 자살, 각종 중독에의 의존 등 정신건강 문제가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정신재활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적법성 여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책무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자립생활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등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등을 보호·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번호	제목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자립생활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등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
제5조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
제7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규정
제8조 ~제12조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구성,운영 등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
제13조	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 사항 규정
제14조	복지서비스 개발·지원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제15조	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 지원 사항 규정
제16조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등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시책 강구
제18조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 등을 보호·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규정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잦은 치료중단으로 인해 만성화 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고용·주거 및 정신재활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법률에 명시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음.
- 2021년 7월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 수(추정)는 약 450만명(니코틴 사용장애 제외)으로 국민 10명중 1명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만큼 우울증, 자살, 각종 중독에의 의존 등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희귀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정신질환자 추정환자수〉

(단위: 명, '21. 7. 31 기준)

영역		전국	대구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제외)	추정환자 수	4,497,600	209,273
	일년 유병률	10.2%	
불안장애	추정환자 수	2,513,365	116,946
	일년 유병률	5.7%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 수	1,543,294	71,809
	일년 유병률	3.5%	
기분장애	추정환자 수	837,788	38,982
	일년 유병률	1.9%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추정환자 수	88,188	4,103
	일년 유병률	0.2%	

※ ' 21. 7. 31.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전국 44,094,123명, 대구 2,051,697명)

※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일년 유병률 참조

-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고 일컫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의 심화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실태조사와 정신건강상 문제 조기발견의 적극 추진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사업 추진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운영 중인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1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현황
--------------	----------------------

■ **정신질환자 지원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8,356	2,405	5,951	9,298	3,094	6,204	10,579	3,757	6,822
광역정신 건강 복지센터 (광역자살 예방센터) 운영	1,147	451	696	1,410	579	831	1,628	687	941
기초정신 건강복지 센터운영	2,619	1,746	873	3,295	2,197	1,098	3,967	2,645	1,322
중독예방 관리사업	415	208	207	423	212	211	426	213	213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0	0	0	159	106	53	318	212	106
정신재활 시설 운영	4,050	0	4,050	4,006	0	4,006	4,134	0	4,134
정신 질환자 인권보호 등	125	0	125	5	0	5	106	0	106

■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자살 유족 자조모임 운영 및 가족강사 지원
- 정신장애인 가족 문화 활동 지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사업 및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 운영 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개 구·군)

-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신규발견 및 등록·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타해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개입 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동구, 달서구)

- (중독질환관리)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 (중독질환 가족지원) 사례관리,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위기관리
- (중독폐해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예방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등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최적기의 치료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망상장애등 최초진단 후 5년이내 환자
- (외래치료비 지원) 퇴원 후 치료 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정신재활시설 16개소 운영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참고자료2 정신건강복지사업단 운영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구성기준

- 인 원 : 단장 포함 5 ~ 10명 이내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자 격
 - 시 소속의 정신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직무범위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통계 수집 분석 및 지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시설 평가 등

■ 구성현황

- 임 기 : 2019.12.1. ~ 2021.11.30.(2년) ※ 최초 위촉 2007. 9.28.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함.
- 인 원 : 10명(당연직 1, 위촉 9)

참고자료3 대구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운영개요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9조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최초 민간위탁 2012년~

○ 수탁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12년 ~ ' 23년 : 재위탁)

※ 수탁조건: 정신건강증진시설(병원·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된 학교

○ 위치 : 대구의료원 3층 생명존중센터 내(331㎡)

○ 센터장 : 이종훈(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조직 : 30명(센터장 1, 부센터장 1, 상임팀장 1, 팀장 4, 팀원 23)



■ 예산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147	1,410	1,727
국비	451	579	687
시비	696	831	1,040

■ 사업내용

추진전략	추진 내용
<p>정신건강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이동상담차 운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심리상담실 운영 • 정신건강 인식개선 : 통합홈페이지 운영, 정신건강 홍보사업, 정신건강한마당 축제, 코로나19 힐링송 공모전 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및 자문단 운영
<p>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조사 : 코로나19 대구시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대구광역시 지역사회진단조사(2년 주기) •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정신건강사업 추진 전략회의, 유관기관 업무 협약 및 회의,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정신건강증진기관 실무자 워크숍 등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지원 : 정신건강 대응 가이드북 개발,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서비스교육, 가족강사 지원, 정신장애인 및 가족 문화생활 지원
<p>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피해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 : 문제성 음주 선별 및 단기개입(SBIRT) 교육 실시 • 중독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p>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인식개선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온·오프라인 자살예방 캠페인 • 자살 위험환경 개선 : 자살유해정보 미디어 모니터링 운영, 번개탄 판매처 대상 생명사랑 실천기관 운영, 생명지킴 보안관 활용한 자살사망다발지역 집중관리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 청소년, 청년·중장년층, 노인 대상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24시간 응급개입팀 운영,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 자살유족 심리지원 및 자조모임, 심리부검